

'20년 3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림.

예비비 사용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,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- 「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3조(예비비의 사용)

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 654,969천원 (2020.8.14.)

○ 예비비 사용 사유

- '19년 8월,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원고인 한국철도공사는 기 지급('17년 10월)된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(손실보상금)을 서울시(노원구)를 상대로 청구하였고,
- '20년 6월, 법원은 기 지급된 보상금과 법원감정금액의 차액, 지연손해금 및 법원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음.
- 법원의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한 바,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채택하였고,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변론진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일단위로 발생하는 점,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였음.
- 결정금액은 예산 편성시 소송결과 예측이 어려웠고, 결정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 발생이 지속되어 조속히 지급하여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 '20년 8월 예비비 6억5천5백만원을 사용하여 원고인 한국철도공사에 해당 결정금액을 지급하였음.